

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

구 분		내 용
승인번호		110006
승인일자		1986년 12월 16일
통계종류		보고통계
보고대상	지역	■ 전국
	범위	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징수 현황
	보고단위	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징수액
	보고대상 규모	■ 17개 시도, 226개 시군구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액
보고항목		■ 지방자치단체별·회계별·항목별 징수결정액 및 징수액, 세외수입원별 징수액 등
자료보고방법 및 작성방법		■ 행정집계
보고기간	기준시점	■ 매년 12월 31일 기준
	보고시기	■ 작성기준년도 익년 7월~12월
	보고주기	■ 1년
공표	공표시기	■ 작성기준년도 익년 12월
	공표주기	■ 1년
	공표방법	■ 간행물(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)
보고체계		■ 사·군·구→시·도→행정안전부
자료이용시 유의사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각 항목의 금액단위는 백만원이며, 표시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여 그 내역은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(2013.7.29.)에 따라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·세출 예산편성시부터는 잉여금, 전년도이월금, 융자금 원금, 전입금, 예수금 및 예탁금이 세외수입 항목에서 제외됨 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(2016.7.26.) 시 변경사항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예산 편성시부터 반영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에 사·군·구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추가 -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에 과징금, 이행강제금, 변상금, 위약금이 각각 분리 ■ 지방기금법에서 2017.1.1.부터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이 기금으로 전환됨
주요 용어해설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상적세외수입 :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 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용료, 수수료, 재산임대수입, 사업수입, 징수교부금수입, 이자수입 등 ■ 임시적세외수입 :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대체로 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규모 예측이 어려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산매각수입, 부담금, 과징금 및 과태료, 기타수입, 지난년도 수입 등 ■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수입 : 일반회계(기타 특별회계)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유사한 개념으로, 상수도사업의 급수수익, 하수도사업의 사용료수익, 공영개발사업의 용지매출수익,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이자수입 등이 해당 ■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외수입 : 일반회계(기타 특별회계)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유사한 개념으로, 고정자산 매각수입, 투자자산수입, 지난년도 수입 등이 이에 해당
주요 연혁		■ (1986년)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통계 작성 승인(통계청)